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에 앞서 계약 해지 통보를 1, 2차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공고기간: 2025. 1. 13.(월) ~ 1. 31.(금)
2. 의견제출(도착)기한: 2025. 1. 31. 17:00
3. 공시송달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아르키비아 건축사사무소 대표 허0미
	주 소	충남 계룡시 장안로 43-0 대승빌딩 508-2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청양초등학교 감성꿈틀사업 설계용역」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과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